황보수정 지음, 「공인노무사 핵심정리 민법」 제2판 사용자를 위한 추록

민법 [시행 2018.2.1.] [법률 제14965호, 2017.10.31., 일부개정]으로 정오표를 작성합니다.

[1] 26면 제5조의 제2항 수정:

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
[2] 50면 제71조 내용 중 (발신주의) 삭제:

제71조【총회의 소집】
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 (16)

[3] 52면 제45조 제3항 추가:

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[4] 54면 제85조 제1항 수정:

…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…

[5] 91면 제111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제111조【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】
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 (11)
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(11)

[6] 103면 제135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제135조【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】
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(05·08·17)
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7] 114면 제141조 수정:

제141조【취소의 효과】
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(償還)할 책임이 있다. (05·06·08·11·14·16·17)

[8] 115면 제144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제144조【추인의 요건】
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9] 181면 제398조 제5항 수정:

제398조【배상액의 예정】
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10] 200면 제407조 수정:

… 위하여 그 효력이 …

[11] 250면 제460조 수정:

… 통지하고 그 수령을 …

[12] 331면 제590조 제1항 마침표 추가:

…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.

[13] 343, 347, 348, 349, 350, 351면 제652조 수정:

제652조【강행규정】
제627조, 제628조, 제631조, 제635조, 제638조, 제640조, 제641조,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
[14] 363면 제660조 제3항 수정:

…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 …

[15] 370면 제674조의4 제2항 수정:

… 계약상 귀환운송(歸還運送) 의무가 …

[16] 387면 제717조 수정:

제717조【비임의탈퇴】
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
1. 사망 2. 파산 3. 성년후견의 개시 4. 제명(除名)